

2024. 2. 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02-2133-7370
----------	-----	--------------

복지공동체팀장	박정현	02-2133-7386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1쪽

누리집

wis.seoul.go.kr  
(돌봄복지→ 긴급복지지원제도)

##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 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 서울시, '24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 작년 대비 29억 원 증액
- '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 연료(난방)비도 4만원 인상... 선(先) 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등도 운영
- 시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

# 성북구에 홀로 사는 60대 김모 씨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고 거동이 어렵기 시작하면서 3개월째 우유만 먹으며 지내왔다. 심각한 영양실조까지 겪고 있지만 병원 치료까지 거부해 호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을 통해 입원을 도왔고 퇴원한 뒤로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역 주민과 아침 자율 청소, 중장년 남성 요리교실에도 참석하는 등 건강한 삶을 되찾아 가는 중이다.  
( '23년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례 中 )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2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했다.

〈2023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 가구, 백만 원)

연 도	총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 타 (연료,해산,장제,전기료 등)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23	21,672	12,333	12,334	6,617	7,359	5,152	1,038	415	941	148

<전세사기 피해자·범죄피해자 거주주택 이웃한 피해로 이사 간 경우에도 지원>

-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키로 했다.

○ 지원대상 위기사유 추가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 (특별법 제28조) ①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포함)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

<생계지원액 '23년 162만원→'24년 183만원(4인 가구) 인상돼 더 두텁게 지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

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2023년~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단위 : 원)

생계지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비고
2023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단가 적용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증가율	14.4%↑	13.7%↑	13.4%↑	13.2%↑	12.8%↑	12.4%↑	

<연료(난방)비 4만원 인상, 선(先)지원 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도 운영>

-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지원 등도 지원된다.

-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담당자 선지원 제도’는 급박한 상황에서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구 사례회의’를 개최해 사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최초 1회 특별지원은 복지수급 이력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당장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 ‘3번’ 긴급복지)로 연락하면 각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붙임5 참조)로 문의할 수도 있다.
  -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는 평일 09~18시 운영되며 야간·공휴일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원대상 : 관련법 및 洞·區 사례회의 통해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 질병·부상·방임·학대, 실직, 화재·자연재해, 가정·성 폭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지자체가 정한 사유
- 지원내용 : 현금 및 현물 지원 [생계·주거·의료·기타(교육지원 등)]
  - 소득·재산 등 기준 충족시 지원 (단, 洞·區 사례회의로 기준 초과자 지원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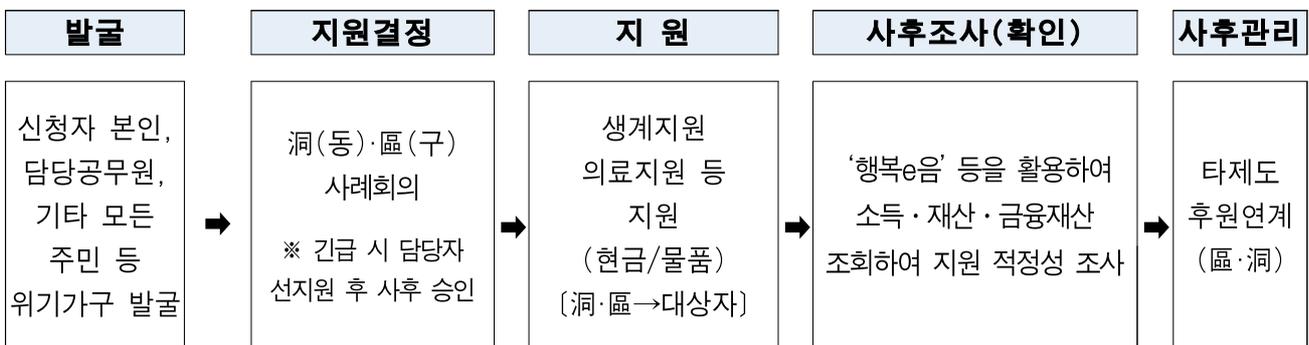
(단위 : 원)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수						추가 지원	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1회	1년 (회계 연도)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1회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없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없음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						없음	
기타지원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없음	

※ 긴급복지지원법 금액 적용 :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지원  
 ※ 서울특별시 자체 금액 적용 : 의료지원, 주거지원

**□ 지원절차**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 필수이행 : 모든 지원자는 동(洞)·구(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붙임2

## 국가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 비교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복지지원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li> </ul>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li> <li>• 재산 : 310백만원 이하</li> <li>•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li> <li>• 재산 : 409백만원 이하</li> <li>•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li> </ul>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li> <li>- 생계지원 : 71만원(1인) ~ 183만원(4인기준)</li> <li>-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li> <li>- 주거지원 : 39만원(1~2인), 66만원(3~4인)</li> <li>- 복지시설이용 : 55만(1인) ~ 149만(4인)</li> <li>- 교육비 : 초(12만원), 중(18만원), 고(21만원)</li> <li>- 연료비 : 15만</li> <li>-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li> <li>-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항목, 중복 지원 가능</li> <li>- 생계지원 : 71만원(1인) ~ 183만원(4인)</li> <li>- 의료지원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li> <li>- 주거지원 : 가구원 구분 없이 100만원 이내</li> <li>- 기타(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연료지원,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금액은 국가 긴급복지 준용</li> </ul>
횟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최대 지원 횟수 상이</li> <li>- 생계비(6개월), 의료비(2회), 주거비(12개월), 복지시설(6개월), 교육비(2회), 연료비(6회), 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원칙 (지원 한도액 내 다회 가능)</li> <li>- 추가지원 (생계비 및 의료비 1회, 고독사 1인 위험가구 생계비 1회)</li> <li>• 특별지원</li> <li>- 소득재산기준 초과자, 위기상황 미충족자 등 예외적으로 생계지원 1회 가능 (추가지원 불가)</li> </ul>
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경과 후 (생계지원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회계연도 기준)</li> </ul>
수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 자치구 → 동주민센터</li> </ul>
2024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3,020백만원 (국비 50%, 사비 25%, 구비 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860백만원 (사비 100%)</li> </ul>
2023년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8,099가구, 51,313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72가구, 12,333백만원</li> </ul>

연 도	2023년	2024년
<p>위기사유</p>	<p>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p>	<p>15. &lt;삭제&gt; 16. &lt;삭제&gt;</p> <p>&lt;신설 &gt; 15.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p>
<p>생계지원(만원, 가구)</p>	<p>62만원(1인) ~ 162만원(4인) ('23년 기준중위소득 30% 수준)</p>	<p>71만원(1인) ~ 183만원(4인) ('24년 기준중위소득 32% 수준)</p>
<p>연료비</p>	<p>11만원/월</p>	<p>15만원/월</p>
<p>의료지원</p>	<p>○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u>한방병원 입원료</u>, 해외 병원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 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p>	<p>○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u>수술 등 치료를 받고 이와 직접적 연계치료를 목적으로 한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u>( '긴급복지 지원사업안내 질의응답집' p.78)를 제외한 <u>일체의 한방병원 병원비(입원료, 수술비, 한약(첩약), MRI 검사 등)</u>, 해외 병원비,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 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p>

**붙임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수범사례**

<p>① 자치구</p>	<p>성북구(김00, 男, 60대)</p>
<p>발굴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 이웃이 대상자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고 주민센터 의뢰</li> <li>○ 동 방문간호사, 공무원이 구조대 및 경찰 동행하여 방문했으나, 병원 진료 거부</li> </ul>
<p>대상자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세거주 1인 가구, 수급가구(생계, 주거급여)</li> <li>○ 대상자는 3개월 전부터 식사를 안 했으며, 뼈만 앙상하고, 영양실조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li> <li>○ 우유외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병원 진료 거부하고 있음.</li> <li>○ 집은 청소와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주환경이 불량한 상태임</li> </ul>
<p>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08.11. 복지플래너 및 동 방문간호사 동행 병원 입원 (서울의료원)</li> <li>○ 2023.08.14. 서울의료원 건강돌봄네트워팀 사례관리 협조요청 (각종검사 및 치료진행)</li> <li>○ 2023.09.05. 치료 후 사후관리를 위해 성가복지병원 입원 의뢰 및 입원치료(돌봄SOS 병원동행서비스 이용)</li> <li>○ 2023.09.20. <a href="#">서울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a></li> <li>○ 2023.09.15. 주거환경개선 사업 진행 (전자렌지, 식기류, 청소-돌봄SOS주거편의)</li> <li>○ 2023.10.07.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하여 통원치료 (병원동행서비스 이용)</li> <li>○ 2023.10.10. 균형잡힌 식사제공(돌봄SOS 식사배달)</li> <li>○ 2023.10.18. 빨래방서비스 의뢰 및 해충방역 실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보건소)</li> <li>○ 2023.10. ~ 사회관계망형성 프로그램 참여 (중장년남자요리교실 참여 / 자율아침청소 참여)</li> <li>○ 2023.10. ~ 월1회 정기 검진 병원 방문 (돌봄SOS 병원동행서비스 이용)</li> <li>○ 2024.12.30.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발급 및 제출 (건강돌봄네트워크팀 업무 협조요청)</li> </ul>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단위 사례관리 진행</li> </ul>

② 자치구	송파구(신00, 女, 40대)
발굴경위	○ 2022년 11월경, 가정폭력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송파구와 송파경찰서가 협업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로 대상자의 사례가 접수됨.
대상자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는 공공전세임대거주 4인 가구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보호조치를 하여 남편과 분리되어 있는 상황</li> <li>○ 대상자는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과 상습폭행으로 입술봉합수술까지 받았으며, 당시 아르바이트로 100만원가량 소득이 있었지만, 24개월 자녀의 기저귀와 생필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음.</li> <li>○ 장기간의 폭력에 노출당해 무기력한 대상자를 설득, 경찰과 협업을 통해 임시거처마련, 국가형긴급, 서울형긴급 생계비, 난방비, 전세임대주택, 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공적급여와 민간자원을 연계함.</li> </ul>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11.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li> <li>○ 22.12. 사례관리 생활지원비(기저귀, 세제, 공기청정기 등) 물품 지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난방비 지원</li> <li>○ 23.01. 기초생활수급(생계, 주거급여) 신청</li> <li>○ 23.02.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연료비 지원</li> <li>○ 23.03.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주거비_보증금) 후원</li> <li>○ 23.05. 희망스폰서 생계비 지원 등등</li> </ul>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01. 기초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li> <li>- 2023.08. 한부모가족 선정</li> </ul>

**붙임5****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전화번호	운영시간	비고
1	종로구	02-2148-1121	09:00~18:00	
2	중 구	02-3396-1004	09:00~18:00	
3	용산구	02-2199-7088	09:00~18:00	
4	성동구	02-2286-7942	09:00~18:00	
5	광진구	02-450-1140	09:00~18:00	
6	동대문	02-2127-5001	09:00~18:00	
7	종량구	02-2094-1615	09:00~18:00	
8	성북구	02-1577-3178	09:00~18:00	
9	강북구	02-901-7300	09:00~18:00	
10	도봉구	02-2091-4379	09:00~18:00	
11	노원구	02-2116-3291	09:00~18:00	
12	은평구	02-351-8888	09:00~18:00	
13	서대문	02-330-1004	09:00~18:00	
14	마포구	02-3153-6267	09:00~18:00	
15	양천구	02-2620-3333	09:00~18:00	
16	강서구	02-2600-1120	09:00~18:00	
17	구로구	02-860-3098	09:00~18:00	
18	금천구	02-2627-1004	09:00~18:00	
19	영등포	02-2670-3964	09:00~18:00	
20	동작구	02-820-1864	09:00~18:00	
21	관악구	02-879-5889	09:00~18:00	
22	서초구	02-2155-8339	09:00~18:00	
23	강남구	02-3423-6029	09:00~18:00	
24	송파구	02-2147-2722	09:00~18:00	
25	강동구	02-3425-5050	09:00~18:00	